##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05 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 박재호·허 영·정춘숙

조정식 · 홍성국 · 김윤덕

오영환 · 김정호 · 이용빈

김영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·사법·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 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 국가재건최 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 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.

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(令)과 포고(布告)는 1961년 6월 6일 제정된 「國家再建非常措置法」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, 「國家再建非常措置法」은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,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「國家再建最高會議法」도 2009년 4월 1일 폐지되었음.

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「預金凍結의 一部解除」는 사실상 실 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,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

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